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성배,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2명)

1. 제안이유

- 2021. 5. 18.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는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었음.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하여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여가 보장 정책추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명시함(안 제9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u>저</u> <u>소득층 및 다문화가정</u>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5. ----- <u>저</u> <u>소득층, 다문화가정 및 18세</u> <u>미만의 아동</u>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문 서 번 호

2021072100000008

미첨부 사유서 (2호)

요 청 인 : 정진술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 07. 21.

회 신 일 : 2021. 07. 21.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안 제9조제5호 사회적 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 을 추가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의 여가활동 지원 사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가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5

e-mail : thdud36@seoul.go.kr